주요 질의 응답(Q&A)

일반사항

② 전자출입명부는 무엇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시설 (업소) 등에서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 배포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합니다.
 - 영문으로는 KI(Korea Internet) Pass, '키-패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의 앱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 QR코드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앱 운용회사와 협력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암호화된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전자출입명부는 왜 필요한가요?

७, येग्रं वित्तन्त्र मा चेम्प्रीमः

통화 가능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애로를 겪었던 바 있었습니다.

◢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 *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20.3.22)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 또한 기존 수기기재 방식의 명부는 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필기구 등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반하여.
 - 내 개인정보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코드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코드 사용과 이중 보관체계(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 또한, 수기명부 작성 시 필기구 등에 의한 접촉감염의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 확진자 노출에 대해, 신속한 검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은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

•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시설 내에서의

감염을 막고,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역학조사에 활용되나요?
-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코드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는 시설명, 출입 시간과 암호화된 QR코드만 저장됩니다.
 -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전화번호 혹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시설명, 일시 등을 특정하여 2개 기관(QR코드 발급회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접촉자 정보를 요청하여 역학조사에 신속 활용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관은 해당 시설의 위험도,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접촉 수준에 따라 자가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 문자 발송 및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 시설 출입시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 제17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QR코드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한 집합제한명령('20.5.8.)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가 도입됨

-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없나요?
- 전자출입명부는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시설명, 시간과 암호화된 QR코드만 저장됩니다.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코드 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코드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출입명부에는
 - 전자출입명부와 관련된 이들 정보는 2개 기관에 분산되고 암호화되어 저장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정보만으로는 이용자의 동선 파악 등이 불가능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에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만이 이들 두 개 기관에서 분산 보관된 암호화된 정보를 묶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가 끝나고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및 '경계'시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는 총 4개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는 지역사회에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이상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관리는 더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부모님의 동의(문자인증 등)하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국민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사용은 본인 동의만으로 QR코드 코드를

②.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하가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 A.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경우 시설에 비치된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절차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설 출입에 크게 제한은 없을 것으로
-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국내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QR코드 발급을 위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도 별도 '수기명부'에 기재(신분증 제시 필요)하는 방식으로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나요?

(KI-Pass QR코드 발급에는 불필요)

- 시설관리자 등 전자출입명부를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안드로이드 4.1 이상 기기 필요)는 Google Play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설치합니다.
 -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iOS 11 이상 기기 필요)는 Apple 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 조자출입명부 관련 자세한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 네이버, Youtube 검색창에서 '전자출입명부'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지사항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로 검색
 - * 홍보자료 & FAQ 홍보자료 일반인 "전자출입명부"로 검색

이용자

- ② 전자출입명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 . 시설 이용시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의 앱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 QR코드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앱 운용회사와 협력
- QR코드 발급은 네이버에서만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네이버 외에도, PASS 및 카카오톡 앱에서 가능합니다.
 - 2020년 6월 10일 본 사업 실시일 기준으로는 네이버만 가능했으나, 6월 24일 이후 PASS(통신사 본인 확인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 7월 1일 이후 카카오톡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 본인이 QR코드발급이 어려운 상황(예, 고령, 장애 등)에서, 타인이 QR코드 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이용자 본인의 사정(예를 들어, 고령 등 전자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 있을 경우, 타인(예를 들어, 가족, 시설관리자 등)이

QR코드발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단,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이용자 본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네이버 가입, 본인 인증 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시설 출입 시 국민 여러분께 QR코드 등록 및 스캔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4주 후 정보가 자동 파기되나요?
- ▲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코드 및 출입기록 등은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의 두 배 기간인 4주(28일) 동안 저장・관리됩니다.
 - 4주만 서버에 저장 및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며,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가 본인 책임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파기가 정확히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가 암호화·분리 관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안전한가요?
- 정말 안전한가요?
- 해당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기 위해 QR코드 코드로 암호화, 특정 기관 내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임의로 플어 하이하지 못하다로 부사보라하는 지스템 으여전체에

◢ ● 개인의 시설 출입 등 동선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풀어 확인하지 못하도록 분산보관하는 시스템 운영정책에 기반하여 설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 QR코드는 음영으로 구분된 박스 형태의 2차원 코드로서, 사람이 직접 해당 QR코드를 인식,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 리더 등을 통해 시스템이 인식하는 경우에도 난수로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해킹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추가질문) QR코드 발급회사는 QR코드 코드를 풀 수 있지 않나요? - 네. QR코드 발급회사는 암호화에 사용된 kev를 가지고 있기
- 네. QR코드 발급회사는 암호화에 사용된 ke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QR코드을 풀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QR코드 발급만 할 뿐, 전자출입명부의 특정 시설 출입사항과 연계하지 못하여 개인의
 - 전자출입명부를 저장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코드 정보와 시설, 출입시간만을 이중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어, 역시 개인의 동선정보 확인은 불가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받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매우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장시, QR코드가 두 번 이상 스캔되어도 괜찮은가요?
- ◢. 네. 두 번 이상 스캔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 동일시설에서 두 번 이상 스캔된 경우에도 접촉자 파악 등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추가질문) 시설에서 나갈 때에도 QR코드 코드를 스캔해야 하나요?
 - 입장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 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 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합니다.
- ②, QR코드를 한 번 발급받아도, 다른 시설 방문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 다른 시설 방문 시, 동일한 절차로 QR코드 코드를 발급받아 스캔해야 합니다.
 - 전자출입명부에 활용되는 QR코드 코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한 일회용 QR코드 코드로 발급됩니다. 15초가 지나는 경우 간단히 재발급 버튼만 누르면 새로운 QR코드 코드가 생성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질문) QR코드최초 발행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했었는데, 두 번째 QR코드발행시에도 또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QR코드 코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인증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이후 QR코드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동의 절차만을 통해 QR코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관리자

- 절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시설관리자의 휴대폰(스마트폰) 혹은 별도의 공기계(WiFi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 및 등록(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여야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열고, 로그인 한 후, QR코드 스캔 버튼을 눌러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절차로 사용합니다.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확인 불가
-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무엇인가요?
- 집합제한명령(중수본·지자체)이 내려진 시설이거나 고위험시설* 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20.8.19. 기준이며,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별첨2(57쪽)]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0~12점에 해당하는 시설

- ②.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통신곤란 시설이나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인 시설 등의 경우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적용 예외 될 수 있습니다.

 수기명부는 이용자 중 휴대폰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병행하여 비치·활용할

- 수 있습니다.

 ②. 의무시설인데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운영 계도기간 이후,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영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또는 10만원 이하(이용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전자출입명부 임의시설인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임의시설 또는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의 등록은 상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실 사용지 주소) 및 방역관리자의 입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시 방역 상, 편의 상 이점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고드립니다.
- 시설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어닙니다.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누구도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 다만, 시설관리자는 시간대별로 출입자 통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관만이 역학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의무적용시설은 전자 또는 수기명부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무적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하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를 비치 후 사용합니다.
 -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의 시설 방문 확인 시 별도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의 기재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거부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수기명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등록 메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 출입구가 여럿인 시설에서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QR코드를스캔해야 할 경우 직원등록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또는 방역관리자)가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을 다른 개인적 용도(통화, 게임 등)로 이용시, 시설내 직원이 '전자출입명부(KI-Pass)'에 로그인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출입
- ②.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경우, 어떻게 시설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내 접촉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지점은 별도의 방역관리자를 지정, 별도의 계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었을 경우, 기 등록한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에게 신규 등록된 사항을 문자로 송부, 신규 등록된 지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계없는 시설의 등록 시 문자에 송부된 기술팀에게 통보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입장과 퇴장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명확한 체류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장과 퇴장으로 나눠 스캔하는 방안도 시스템 설계 시 고려되었으나,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입장, 퇴장을 나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권고) 입장 시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퇴장시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장 시에도 스캔하시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스캔을 권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스캔 시간 등을 분석하여 체류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 (추가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체류시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확보하는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장소의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 체류시간을 확인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정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여 검사요청 문자 등 방역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사용 중,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화인되지 않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해당 시설의 방문이 확인된 확진자가 확인되는 경우, 방역당국의 시설 소독명령 등으로 해당 공간이 일시 폐쇄됩니다. 이후 다시 열린 해당 시설은 확진자에 의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 직원도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 시설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직원 포함)은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 시설이용자, 직원 모두 해당 공간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확진자의 방문이 확인된 시설 내 모든 사람은 접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국인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 어떻게 입장하나요?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은 시설 방문시 별도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신분증 확인 포함)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집합제한명령 등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혹은 임의 설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은
 시설 내 방역조치(손소독제 비치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위한 태블릿, 데이터 비용 지원은 안되나요?

절,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이 가능한 운영환경은 무엇인가요?

있습니다.

- ◢. 최근 3~4년 내 구입한 스마트폰(혹은 태블릿PC)은 전자출입명부 앱의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단, 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을 지원해야 함
 - 또한, 오토포커스(Auto-focus)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QR코드 인식률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시설 내 와이파이(Wi-Fi)가 꼭 연결되어야 하나요?

- ♠ 꼭 와이파이(Wi-Fi)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TE 등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그저 시선에 선치되 WiFiol 연결의 기그하나다.
 - 가급적 시설내 설치된 WiFi와 연결을 권고합니다.

 QR코드인식용 휴대폰 또는 테블릿 PC(전자출입명부 앱이 설치된 단말기) 자체에서 LTE 혹은 5G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시설 내 별도의 인터텟 연결이 어려울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 QR코드인식용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에 스피드게이트 등 다른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관리하고
- ⚠. 스피드게이트의 운영 서버에 개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출입일시)가 4주 이상 저장되고,

전자출입명부 적용 예외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의 경우 즉각적인 접촉자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가급적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을 권합니다.

방역당국에 즉각 제출할 수 있을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 전자출입명부 앱 사용시 QR코드 인식율이 떨어져, 이용자 입장 시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개선책이 있나요?
- . 가급적 후면 카메라의 이용을 권고합니다.
 - 대부분의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에 내장된 auto-focus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인식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to-focus로 조정되는 시간을 줄이면(고정된 거치대와 특정 거리(20~30cm)로 떨어진 곳에 휴대폰 받침대를 놓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인식율이 높아집니다.
- 이벤트 업체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특정 행사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업체의 경우 해당 이벤트별 별도 계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의 휴대폰 이외에 별도의 장비 없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들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비치된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방식(신분증 제시 포함)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 또는 수기명부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질문)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수기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미성년자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수기명부에 작성 가능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앱을 컴퓨터(노트북 등)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 국민 대부분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별도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의 개발 및 지원으로 진행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시급한 방역조치의 하나로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별도 단말기, 스캔 장비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앱 실행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 절,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 ⚠. 각 광역(시도)지자체에서 업무책임자가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kipass.ssis.or.kr)에 회원등록 후, 중수본에 공문으로 승인요청, 각 기초(시군구)지자체에서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회원등록 후, 광역(시도)지자체가 승인한 후 관할지역 내 시설에 대한 관리 가능합니다.
 - * 관내 등록업소, 운영사항(일자별 출입명수 등) 확인 가능함. 지자체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서 의무·임의 시설 등을 구분해 설정 가능하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삭제 가능함
- 🥝 불가피한 사유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죠?
- △. 고위험시설 등 의무적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설치 및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의 예외가 됩니다.
 -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가능한 시스템 한정하며,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가능한 시스템에 한정하여,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정보 제출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대체적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인증은 반드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 PC방은 의무적용시설입니까?
-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지속 발생하고, 이후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20882('20.8.15.)호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교회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입니까?

및 운영 제한 조치' 공문 참고

- A.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의무화 행정명령(집합제한) 해제에 따라 '20.7.24.18시 이후로 지자체에서 교회에 동 해제를 안내함에 따라 의무 적용은 해제되었습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18616('20.7.22.)호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안내' 공문 참고
- ②. 1회성 행사인데 코로나19 감염이 염려되어 전자출입명부 사용 가능한가요?

-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측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자출입명부상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요?
-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연락, 시·도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청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내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 연계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 확인이 가능(`20.7.1.)합니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5634('20.6.30.)호'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활용안내' 공문 참고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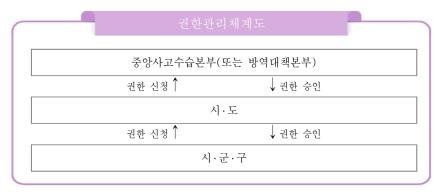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kipass.ssis.or.kr) 개요

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 기관 확인 안내 및 관리, 필요시 현장점검
- 유흥업소 등 적용대상기관에 전자출입명부 활용 방식 교육·지침 하달

나. 권한 관리

- 권한관리체계는 시스템* 관리자(중수본, 방대본), 시·도 업무담당자, 시·군·구 업무담당자로 구성
 -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 공무원



- ※ 6.28.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권한 신청, 추후 방역대책본부로 이관
 - * 시·도 당담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회원가입) 후 부록 2의 '권한신청서(시도업무책임자)'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공문 송부
 - * 시·군·구 업무처리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별첨의 '업무처리담당자 권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송부하고, 시·도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 * 중수본(또는 방대본)에서는 시도 담당자에 대한 권한신청요청 건을 승인

다. 권한 변경 및 중지

- 권한을 부여받은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기부여 받은 권한을 종료 처리하여야 함
 - * 시·도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의 권한 반납시 별첨의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권한 반납서'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공문 송부
- 시·도 업무담당자는 퇴직,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해당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더 이상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중지 처리를 해야 함
 - * 3개월 미사용자는 권한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재사용 원할 시 재승인 필요
 - *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의 권한 반납시 별첨의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권한 반납시'를 작성 및 스캔(pdf)하여 시·도 로 공문 송부하고, 시·도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지자체)

라. 시스템 사용방법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사용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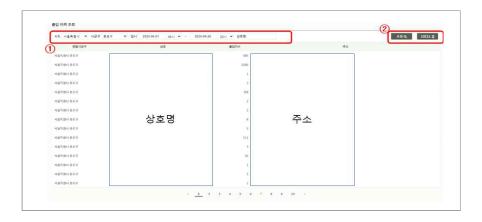
- ① https://kipass.ssis.or.kr 사이트 접속 후 사용신청 클릭
- ②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신청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 ③ 승인요청 후 권한신청서를 작성 및 스캔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공문 송부 ※ <u>시·군·구</u> 업무처리담당자는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 ID를 등록 후, [부록 2]의 '업무처리담당자 권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업무책임자에게 승인 요청

• 사업자 조회



- ① 검색조건(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시설구분, 상태 선택 및 입력
- ② 입력한 검색조건으로 사업자 정보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③ 돋보기 버튼 클릭 시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조회
- ④ 수정 버튼 클릭 시 사업자 정보 수정화면으로 이동
 - ※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선택안함"으로 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및 정상가입 확인 후 "임의시설" 또는 "의무시설"로 변경(수정)

• 출입이력 조회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지자체)

- ① 검색조건 입력 (시도, 시군구, 일시. 상호명)
- ② 입력된 검색조건으로 출입 이력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사용자 관리



- ① 검색조건 입력 (시도, 시군구, 이름)
- ② 입력된 검색조건으로 출입이력 조회
- ③ 승인 또는 반려 할 사용 체크박스로 선택
- ④ 체크박스로 선택된 사용자 승인 및 반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내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 연계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 확인이 가능(`20.7.1.)
 - * 중앙방역대책본부-5634('20.6.30.)호'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활용안내'공문 참고
- ※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에서 발급한 QR코드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음

[별첨1] 전자출입명부 지자체 관리자 권한등록 및 반납신청서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권한 (□ 신청)서 □ 반납)					
구분	□ 시도업무책임자 (시·도 담당과장 또는 지정공무원 1인)				
	□ 업무처리담당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				
권한부여 신청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등록 ID	# 관리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기입 (https://kipass.ssis.or.kr/)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가급적 korea 메일로 기입			

위 권한 부여 신청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76조의 2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의 권한(등록시설 조회, 특정 기간 내 시설 출입자 암호화 명단다운로드 등)을 신청하며, 신청자 및 신청기관은 역학조사 외다른 목적의 사용 및 누출에 의한 피해 시 법적 책임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000(서명) 기관장 000(직인, 공문제출시 직인날인 생략 가능)

20 . .

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시·군·구 000 시장·도지사 귀하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지자체)

[별첨2]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선정기준 :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고-중-저 위험시설로 구분

< 선정 원칙 >

- ♦ 위험지표 등을 통해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대분류 유형이 아닌 세부시설로 선정
- ◇ 고위험시설은 감염발생 상황,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위 험 도			
주요 지표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때문생환기능	알당수준 환기 가능	때문 환기 불가능	
·(밀집도)	대체로 거리두기	일정수준 거리두기	대체로 거리두기	
이용자간 말집정도	갸능	가능	불가능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관리도) 빙역수칙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i>앨</i> 순	썌로준뷝능	

전단지(리플릿)







포스터



홍보자료(전단지,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주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접속 → '홍보자료 & FAQ' 선택 → '홍보자료' 선택 → '전자출입명부' 검색

안내 동영상 주소

- 7분 39초(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직접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btrO5hbvy4
- 1분49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aiTvBpDgnm0
- 35초(QR코드 전자출입명부, 직접 적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_S18y8Ekhg
- 4분 44초(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feature=youtu.be